

# 서울특별시 트라우마 치유 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67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트라우마 치유 클리닉은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정신보건법 제13조, 제52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 나. 재난 및 인권문제 피해자를 위한 공공차원에서의 전문적인 심리지원체계를 갖추어 양질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트라우마 치유 클리닉
- 시설요건 :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겸비한 의료기관  
(※트라우마 피해자 대상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할 것)
- 개소일 : 2016년 12월
- 이용대상 : 충격적 사건(재난 및 인권문제 피해)에 대해 직·간접 피해를 입어 통합적인 심리,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서울시민

###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6년 12월 ~ 2019년 12월)  
(제8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16.10.7)결과에 따라 3년으로 결정)
- 위탁업무
  - 트라우마 피해자를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 트라우마 피해자를 위한 신체적 및 재활치료 제공
  - 트라우마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공공의료기관에 보급
  - 간접 피해자 대상 트라우마 예방 활동
  - 비상시 대비 서울시 심리지원단 인력풀 구성·운영, 지침서 등 제작
  - 서울시 심리지원 전문가 양성 및 교육
  - 이 외 서울시에서 추가로 트라우마 치유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소요예산 : 300백만원 (2016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신규위탁(공모)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추진현황
  - 신규위탁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해당 사무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기에 직영 등의 방식으로 수행하기엔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며, 급증하는 충격적 사건(재난, 감염병, 인권 침해 등)의 경험으로 일상생활의 적응장애를 겪고 있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동서비스의 제공은 민간(정신의학과 치료)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이런 문제를 민간의 공급에만 맡겨두기엔 추후 사회적 비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임
- 재난심리지원이라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재난심리지원센터’는 재난에 국한된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에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위협(충격적 사건)의 직·간접 피해자에게 통합적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본 사업과는 다르며, 트라우마로 유발된 정신질환(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불안, 우울증상 등)의 예방 및 심리지원, 일상생활 적응 및 사회복귀 증진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지원이 꼭 필요하다 사료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 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보조금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적정(조직담당관)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신선혜 (☎2133 - 7549)